

총회 실행위원회 규칙

제1조 실행위원회 목적

실행위원회는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중요 운영 계획, 심의 등을 업무로 맡아 수행한다.

제2조 실행위원회의 조직

실행위원은 증경 회장단, 총회 임원과 총무, 상비부장, 각 특별위원장, 각 노회장, 각 기관장,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위원장으로 한다.

제3조 실행위원회 소집

1. 1개월에 1회 첫 주일 후 금요일에 소집한다.
2. 임시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, 총회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, 위원 1/3이상 요청할 때 소집한다.

제4조 실행위원회의 성수 및 의결

1. 실행위원회의 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.
2. 실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
단, 법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.

제5조 실행위원회 임원의 조직과 임무

1. 위원장 : 총회장이 되며 임무는 회를 대표하고 그 회를 총괄한다.
2. 부위원장 : 제1부총회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위원장을 대신한다.
3. 총 무 : 총회 총무가 겸무하며 총괄적인 실무를 담당한다.
4. 서 기 : 총회 서기가 겸무하며 회의 소집과 행정실무와 회의록을 보관한다.

5. 회의록서기 : 총회 회의록서기가 겸무하며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의 후 서기에게 인계한다.

6. 회 계 : 본회 재정을 담당하며 그 업무는 총회 재정과는 별도로 하며 실행위원회시에 매회 보고한다.

제6조 실행위원의 직무

1.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.

2. 총회에서 보고할 예산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심의 한다.

3. 규칙 개정 및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 전에 심의한다.

4. 노회를 설립, 분립, 합병 폐지안을 결의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노회 구역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한다.

5. 맡겨진 직무를 처리하되 무단 2회를 초과하여 결석할 시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(위임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). 증경 총회장은 예외이다.

제7조 재 정

1.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매월 1인당 1만원씩 회비로 총당한다.

2. 본 회의 재정 지출 규정은 본 회원의 당사자, 배우자, 자녀, 부모(시부모 및 장인, 장모 포함)의 애경사(결혼, 돌, 장례, 회갑, 칠순등)시에 10만원을 지출한다.

제8조 실행위원회 규칙개정

본 실행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안에 대하여 실행위원회 2/3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.

제9조 부 칙

1. 본 실행위원회의 규칙은 공포일로 부터 효력 한다.

2.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.

3. 주후 2008년 6월 13일 규칙을 축조심의하여 통과시키다.

